유턴 지원전략 2.0

주요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

구분	항목	현행	개선
❶ 인정범위 확대	인정업종	제조업, 지식서비스업, 정보통신업, 방역·면역관련 업종	**유통업(도소매업)** 추가, 업종요건 폐지 검토(중장기)
	자본 리쇼어링	-	**유턴투자로 인정방안 검토** (해외구조조정 요건 면제)
	국내외 제품 동일성	한국표준산업분류 上 동일한 **소분류**(3단위)	동일한 **중분류**(2단위)
❷ 선정·지원 요건완화	해외사업장 운영기간	**2년** 이상	**1년** 이상
	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	첨단기술, 소부장핵심기술 활용제품	**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기술 활용제품 미래자동차 부품·제품 추가**
	해외투자 제한	해외사업장 **구조조정 면제 기업** 보조금 지원시 해외투자 제한	**폐지**
	동반 복귀기업	해외축소 **25% 이상**(일반유턴과 동일) **동일지역**(산단, 특구 등) 내 위치	해외축소 **10% 이상** **동일지역** 내 위치요건 **폐지**
	협력형 복귀기업	수요기업과 물품공급계약 등 필요,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적용	**거래실적, 거래의향서** 제출 가능, **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**
❸ 인센티브, 우대지원 강화	보조금 지원 확대	〈보조금 **예산 확대** : '23년 570억원 → '24년 **1,000억원**〉 - 국가·첨단전략기술 **한도확대** : 非수도권 300억원 → **400억원** 수도권 150억원 → **200억원** - R&D 시설·장비 **지원확대** : 한도외 **50억원 까지** 추가 지원 - **유턴보조금·지역투자촉진보조금** 지원기업 **상호간 가산점 부여**	
	사업재편 지원	- 사업재편기업 유턴보조금 **타당성 평가 가점**(2점) 부여 - 첨단기술 보유 유턴기업에 사업재편 **심의절차 일부 면제** - **사업재편 유형**에 첨단·전략기술 및 소부장 **유턴기업 추가**	
	입지지원	- 조성중인 특화단지(2곳)에 **유턴기업 우선입주**(관리기본계획에 반영) - 특화단지 입주 유턴기업에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(4%p) - **산단구조고도화계획**에 **유턴기업 지원방안** 포함 추진(시도 협의) - 의향기업 **입지수요 지자체에 공개** 후 **수집정보 제공**	
	E-7 발급 지원	**생산관리자** 직종에 한해 발급지원	발급지원 대상에 첨단분야 **8개 직종 추가**
	동반복귀 기업 지원	공동 물류·기반시설 지원 입주시 업종변경 등 편의 제공	투자보조금 지원시 **보조율 5%p 가산**
	해외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	컨설팅 비용의 **30~70% 국비지원**	**非수도권** 복귀기업은 컨설팅비용 **전액 국비지원** (한도 $20,000)

산업통상자원부